

제3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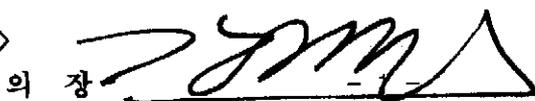
1. 일 시 : 2012. 4. 27(금),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윤성승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효철 의원, 임정민 의원, 강희진 의원, 윤갑희 의원, 김승권 간사
- 총 13명 중 8명 참석 : 김진우 의원, 박윤규 의원, 이강준 의원, 이홍평 의원, 조중열 의원 불참
4. 자문 및 심의 의견 요약 (2011년도 교비 및 병원회계 결산 자문, 학칙개정 심의)

2012년 4월 27일(금)에 아주대학교평의회에서 시행한 2011학년도 아주대학 및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결산 자문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총론에서 볼 때 학교 회계와 의료원 회계 양쪽에 있어 불명확한 자금의 이동 등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간 예결산 자문 과정을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개선필요성들이 제기되었다.

- (1) 대학평의회 자문 및 대학 홈페이지 공시를 위한 본예산·추경예산·결산자료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과목명을 사용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며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산 변경은 반드시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결산자료 작성에 있어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별도의 최종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의료원회계 자료도 최대한 교비회계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 (3)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는 것에 더해 본교와 의대 구분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①등록금회계-본교와 등록금회계-의

< 간서명 란 >

의 장



대, ②기금회계-본교와 기금회계-의대, ③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전체를 파악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부거래 기장 또는 제거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본예산·추경예산·결산자료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본예산과 1차2차3차 추경예산 모두를 결산자료와 비교하는 표의 형식을 사용하되, 각 자료의 작성 기준일을 명시해야한다.

(5) 등록금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 전년도에 심의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 2차 추경예산은 결산 결과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위한 본예산·추경예산·결산자료들이 너무 촉박하게 제공되어 평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예결산 자문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맞추어 본예산·추경예산·결산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전에 3차 추경예산의 작성을 마무리하되, 특히 등록금 회계는 결산자료와 큰 편차가 없도록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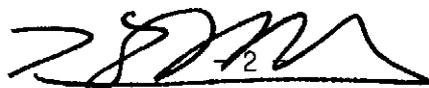
(6) 등록금 회계로부터 기금회계로의 전출은 대학구성원들이 주목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전출금 규모와 명목에 따라 전출이 이루어져 한다.

(7)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차년도 예산의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지장이 되므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자금들의 경우에는 모두 명시 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 자금들을 공식적인 과목명을 사용하여 정리해야 한다.

(8) 법정전입금과 관련된 재단의 의사 결정 내용은 반드시 대학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예결산 자문을 매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아직까지 법인부담금 중 어느 정도를 실제 낼 것인지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 간서명 란 >

의 장



문서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9) 2012. 1. 26.부터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어서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법인과 총무처 및 기획처가 위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작성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업무추진 안내(2012.3.16.과 2012.3.26.)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하고도 이런 사실을 대학평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적 이견 혹은 문서내용 판단 오류에 따른 것이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해당 문서에서 ‘책무성 확보 방안’으로 ‘학교부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사전 심의 필수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마감일인 4월30일 이전 마지막 업무일이자 대학평의회가 열리는 4월 27일까지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학평의회는 법인과 총무, 기획처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0)상기(上記) 교과부 공문과 2011년도 법인 법정부담금 실태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학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이 대학평의회 자문을 거쳐 교과부에 <재정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과부 공문에 따르면 법인이 재정개선계획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1)그 하나는 2012년도 예산 자문을 마친 경우이고 2)다른 하나는 사학연금부담금을 법인이 교비에 의존하지 않고 완납한 경우인바, 아주대학교의 경우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익히 알려진 바, 2012년 1월 30일 개최한 대학평의회에서 의료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2012년도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의 예산안 자문은 완결되지 못하였고, 또한 법정 전입금 실태 자료에 의하면 법인은 2011년도의 경우 1,062,917,000원에 이르는 사학연금 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을 본교 교비로 대납하고 있기에 당연히 대학평의회 자문을 받아 교과부에 <재정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간서명 란 >

의 장



- (11) 따라서 대학평의원회는 5월 중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법인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상근자 (예를 들면, 상임이사)가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재정개선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얻어 교과부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러한 과정이 지연되거나 기피될 경우 아주대학교 대학 평의원회는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미필적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교과부 및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 (12) 의료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2012학년도 예산자문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우려를 의료원 행정부원장에게 전달하였다.
- (13) 의료원의 자료제출거부로 인하여 불발된 2012년도 의료원 예산 및 1차 추정 자문과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안” 보고를 위하여 5월 중 대학 평의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평의원 모두 공감하였다.
- (14) 웰빙센터 건립 자금의 재단 진출 및 의료원으로서의 재전입과 관련하여 교비로 전입되는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금의 이자수입도 웰빙센터 건립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2010학년도 결산자문의견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적하였다.
- (15)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변경)은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 건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직제규정을 근거로 학과장을 임명하는 등 선행조치를 취한 것은 중차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이러한 오류가 재발할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개정을 의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 (16) 학칙개정 관련 절차상 오류의 근원은 대학정신의 제도적이며 실제적인 근간을 구성하는 <학칙>을 법인 이사회 의결사안인 <규정>의 하부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학칙>이 대학운영의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우선적인 준거기준임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학내 구성원은 물론 외부 평의원 까지 모두 “학칙이 대학 운영의 최고규범으로서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고 공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 간서명 란 >

의 장



<규정>과 <학칙>의 관계에 있어서 <학칙>이 교내 최상위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상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 이사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수렴하여 근일 내에 이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5. 회의 내용

의장 강명구 : 성원이 되었기에 제36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세 개입니다. 아주대학교 본교 2011학년도 결산, 의료원 결산, 학칙개정(안) 이렇게 세 개와 보고사항으로 개방이사 와 관련된 교과부 질의 공문 발송, TA활용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인 부담금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살만한 사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법인부담금 관련해서는 회의 중에 끼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결산(안) 자문부터 하겠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입니다.

의장 강명구 : 네. 결산보고해주시죠.

평의원 이순일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님은 결산만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도 담당하십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결산만 담당합니다. 예산은 기획팀에서 하고, 결산은 저희가 경리팀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행정체계상 부원장님은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신건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그렇다고 봐야죠.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직접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결산을 위해 또 봐야 합니다. 예산 대비 사업운영이 걱정했는가 보는 결산을 하려면 예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2학년도 의료원 예산은 자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자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결산이 어떻게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대

< 간서명 란 >

의 장



학평위원회가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심의도 안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결산 자문을 해야 할지 큰 걱정입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예산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의논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예산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병원에서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것과는 꼭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 공문에 따르자면 법인이 부담금 관련해서 재정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대학평위원회를 거쳐야하고 확인된 예산을 첨부해야하고, 2012년도 예산을 첨부하지 않으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구했던 관련 자료를 밝히시고 그에 따라 예산자문 받으시고, 1차 추경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인이 교과부에 재정여건 개선계획서를 내려면 저희가 요구한 그 사항을 다 적게 되어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밝혀주셔서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예산 부분은 제가 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네, 발표해주시죠.

[의료원 행정부원장이 2011학년도 의료원의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의료원 결산(안) 보고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시시오.

평의원 이제호 : 기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출연기본금하고는 다른 거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병원의 웰빙센터 건축기금이 155억이 되겠습니

< 간서명 란 >

의 장



다.

평의원 이재호 : 플러스하면 기본금 액수가 1천억원 이상이 되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평의원 이재호 : 주로 의과대학 건물 비용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송재관은 학교 건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관을 제외하고 병원 것만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만약 이것을 청산하게 되면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인이 가지고 있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병원의 경우 초기 건축부터 법인의 출연이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의원 이재호 : 근데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비회계에 있어서 출연기본금이라고 할 때에는 법인에서 직접 돈이 온 경우만 출연기본금에 들어가지요. 종합관 건축할 때는 법인에서 돈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출연기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병원의 경우 실제 법인에서 전출되어 온 돈이 아니더라도 법인 소유가 된다는 소리가신가요?

의료원 정리팀장 이재권 :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금이라는 개념상 학교와 병원은 똑같이 설립자 기본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병원 같은 경우는 교비와 달리 최초 병원 설립 시 나간 부분, 투자된 부분하고 올해 155억처럼 다시 기본금 넘어간 부분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개념에서 보면 청산 시 분리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청산 시 소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장부상으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원 정리팀장 이재권 : 법인의 회계에 구분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법인 회계에는 이것은 법인 것이 아니다 지을 적에 병원서 낸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의료원 정리팀장 이재권 : 그렇습니다. 법인의 설립자 기본금에 대한 개념하고 계정적으로 부속병원 투자 지출이라는 계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최초에 법인에서 투자된 것은 설립자 기본금에 가있고 나머지는 부속병원

< 간서명 란 >

의 장



투자 지출로 양분되어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는 법인의 기본 자산이 아니다 하는 소리죠.

평의원 이재호 : 진료미수금이 39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시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아직 정산이 안 된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예를 들어 12월, 1월에 발생한 진료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돈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 달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중에 악성미수금 혹은 장기미수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병원의 경우 장기미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미수금은 주로 건강보험에 대한 것인데 아무리 길어도 한 달반 내지 두 달 내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비급여 항목은 어떻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비급여는 저희가 청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사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겠네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6~8페이지 보시면 전년대비 의료외 비용 중 위탁운영비가 30%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원 경리팀장 이재권 : 전체적인 위탁운영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임상시험센터 운영 관련이 한 10억 정도 되고,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운영비로 한 5억7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간호인력 보수운영 교육하는 부분이 한 3천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액들이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됩니다.

의료원 경리팀 파트장곽우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상과 관련된 전문대학 등에서 각 과별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학과라든가 우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달라고 위탁으로 소소하게 요청하는 그런 수익들이 추가로 있고,

< 간서명 란 >

의 장



큰 부분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홍보를 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석해균 선장 관련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아지면서 다른 전문대학교나 간호대학에서 저희 쪽에 위탁을 하면서 적은 금액들이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대료 수익 57억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의료원 임대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지하1층 쇼핑몰 위주와 창고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억이라고 표현 드린 부분은 주로 부대수익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 운영하는 임파크 내원객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임대되어있는 커피숍이나 기타 식당 등을 포함하여 약 44억 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임파크에서 온 게 한 6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2억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교직원들의 주차비는 어느 항목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것은 44억 외의 항목으로 교직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57억하고 44억하고 13억 차이나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11년 예산에서는 임대료 수익을 38.6억 잡으셨다가 결산에서 5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큰 덩어리가 있어 그렇게 늘어났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창고임대료가 늘어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품 창고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KGSP 라고 해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인데요, 그동안 주로 도매업체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약품을 공급해주던 도매상들이 해당되었는데 약사법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현지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확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약이나 기타 폭발성 의약품을 비롯해서 약품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가 작년 중순 9월쯤 났습니다. 철저하게 KGSP 기준에 의해서 창고를 제대로 꾸미고 냉장시설 등의 설비까지 준비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년 예산 때는 없었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사업임대료가 51억이라고 하신 것에서 10억이 빠지면, 지하에 입주한 Mall 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게 44억이죠.

평의원 이순일 :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창고임대료가 10억이고 Mall에서 44억이면 이 둘만 더해도 54억입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아까 말씀드린 게 44억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라해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44억 안에 창고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렇죠.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창고임대료를 빼고 지하 Mall에서 나오는 수익은 34억 인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고 쪽에서 나오는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임파크 쪽에서 주차 수익이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44억에서 뺀 임대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의원 이재호 : 한 24억 정도가?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다시 말씀드리면 내원객들의 주차료 수익이 2억 되고, 창고료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44억에서 18억과 2억을 뺀 24억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57억하고 13억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운영으로 해서 임대료 받는 업체에서 한 5억 정도 되고 뉴로테크가 한 2억 정도 되고 이것을 포함해서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13억에 해당되는 공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여러 가지로 나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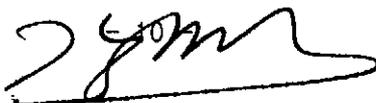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장례식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장례식장은 별것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수임대료 부분이고, 이것은 진료수익 쪽에 연계가 됩니다. 진료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PET-CT를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는 거라서...

평의원 이순일 : 어떤 회사가 병원에 장비를 넣어 왔다 하면 그 장비가 점유

< 간서명란 >

의장



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4억6천정도 되는데요, 뉴로테크에서 한 2억 정도, 임대업체 관리비도 1억정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8억 정도 되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이 중에서 13억은 애초부터 성격상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는 항목이고, 이걸 빼고 44억을 전출한 것이라는 거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평의원 이순일 : 그렇다면 혹시라도 앞으로 운영수익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느 것인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현재로써는 기존 본관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웰빙센터 1층에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식당, 일식당, 이태리 식당을 기본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다 임대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웰빙센터 증축 3개 층을 추가로 했습니다. 5개 층을 지으려다가 실질적으로 3개 층을 증설해서 교수님들 연구실을 포함해서 3개 층이 증축되었는데 그 비용이 약 9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9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그 지하쇼핑몰에서 주로 임대 수익을 예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병원 지하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법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웰빙센터에 입점하는 업체의 임대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니다. 현재 지하 쇼핑몰로 봐서는 같은 형태로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답변 드리기 어렵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44억을 법인으로 전출하시면 법인에서는 다시 의대나 간호대를 위해서 쓰라고 학교로 전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44억을 주시면 의대·간호대를 운영하고 임상교원인건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돈이겠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임상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웰빙센터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으로 전출하면, 그

< 간서명 란 >

의 장



것도 다시 의대·간호대 혹은 본교로 전입되는 것인가요? 하여간 수익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예산을 짜실 때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수익만 90억인가 8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만 현재 계획하고 있고, 임대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잡기가 어려운 것은 평수가 보통 60평, 70평, 100평까지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크게 되면 대부분 임대료를 많이 못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가들입니다. 그렇다보면 월 임대료로 전환이 되거나 하면 다시 임대수익에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월 임대수익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 층 증축하는 비용을 90으로 잡은 것은 사실은 임대보증금을 다 받으려고 계획한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임대료 수익이 증가된다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병원 지하 쇼핑몰의 임대수익의 경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법인으로 전출되고 그 다음 전입되는 형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한 5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반드시 그 선례를 따라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현재로서는 임대료가 거기서 나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의장 강명구 : 만약 나온다면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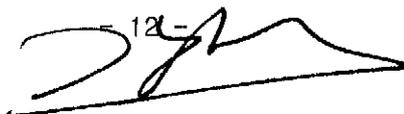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그때 고려할 사항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출연했으니까 밑에 임대료 수익이 가는 거지만 웰빙센터 건축비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수익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향방이 결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라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간다 하는 것은 문제 있

< 간서명 란 >

의 장

- 12 -


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도적으로는 전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당분간은 보증금 받아서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3년 지나든지 사정 좋아지면 임대료 수익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얼마를 전출할 것인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법인하고 전출 관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자꾸 여쭙보는 게 교과부와 관련해서 나중에 법인이 법정부담금 못내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쭙보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주차료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료를 이원화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임파크하고 의료원하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일정 배분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학교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이유가 교직원들에게 비용을 월 4만5천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근버스 노선 5개를 운영하는데 2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고 월드컵 경기장에 내원객 위해 저희 교직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대료가 약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셔틀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에게 받는 부분은 거의 비용으로 나가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중 임파크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건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웰빙센터 건축비로 1월 25일자로 병원에서 법인으로 65억을 전출하고 2월 10일자로 법인이 그걸 다시 병원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날짜로 보자면 불과 16일 차이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전년 결산 시 그 부분을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이 6월 10일에 웰빙센터 자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65억도 즉시 주는 개념으로 회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부상의 부분만 제외

< 간서명 란 >

의 장



하고는 바로 주는 개념으로 바로 주시고 제십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축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진출하는 65억도 있고 간호학부 건축기금 진출 8억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진출하시면 8억에 대한 이자도 기금에 납습니다. 웰빙센터도 병원이 별어서 병원에 짓는 건데, 똑같은 취지라면 90억에서 나온 이자도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야 정상이겠죠? 90억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평의원 이재호 : 참고로 알려드리면 작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법인세를 감면 받는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서 즉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즉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런 것들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즉시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시정되어서 즉시 시행하고 있으니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단골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서 작년 저희와 말씀하신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거기 대규모 조성단지 자체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MOU 체결한 것도 없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네, 없습니다. 아직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의료원 결산관련해서 더 말씀해주실 분 없으십니까?

평의원 윤갑희 : 수익과 비용에 보면 예를 들어 감소부분이 있는데요. 감소부분을 비용부분에서 보면 수탁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요?

의료원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이 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 간서명 란 >

의 장



수탁연구를 받아오는 과정 중에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병원이 3자 협약을 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복지부 계약들만 우리병원에서 수탁연구비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산학협력단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도를 기관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다 산학협력단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수탁연구 수익이라는 게 병원 쪽으로는 줄었고요, 실제 다른 병원들은 아직까지도 강제성이 없는 법으로 인해 수탁연구 수익 자체를 병원수익으로 받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연구는 계속되어 신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주 일부 항목만 남아 있다는 거죠?

의료원 경리팀 파트장 곽우실 : 수탁을 주는 곳에서 3자 계약상 아주대학교 병원이 안 들어가면 절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경우만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학년도 의료원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감사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안녕하십니까?

의장 강명구 :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자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등심위원 두 분은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발표해주시죠.

[총무처장이 201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이제 결산에 대해서 토론해주셔야 되는데, 토론하시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안이 있기에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할까요?

평의원 이순일 : 우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들의 양식과 내용을 모두 통일시켜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서의 예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의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이 아닌 것은 틀림없고, 대학평의회에서 자문했던 3차 추경액수도 아닙니다. 대학평의원들은 지난번에 자문한 3차 추경예산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서의 예산을 3차 추경

< 간서명 란 >

의 장

25 - 15

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학교 홈페이지에도 3차 추경예산을 공지해놓습니다. 외부위원들께서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보셔야 하는데 결산서 상의 예산이 공시 자료와 다르면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3차 추경예산 자문을 할 때 대학평의원회에 주신 자료와 결산서의 형식이 다릅니다. 그 당시 주신 자료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결산서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셨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3차 추경자료와 결산 자료 사이에 1억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찾아보니 본교와 의대 간의 내부거래 두 건을 제거한 것이 차이가 생긴 이유입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평의원님들께 제공한 자료는 3가지입니다. 교비회계 전체, 등록금 회계, 기금회계를 드렸습니다. 이순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비회계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부거래 제거된 금액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례규칙에는 교비회계만 가지고 보면 제거를 시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그런 내용을 찾았습니다만, 3차 추경예산 자문을 할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3차 추경예산 자문을 할 때는 교비 자료만 주셔서 그것만 봤는데, 결산 자료는 나뉘져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표현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의 목적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비회계에서도 기금과 등록금 회계를 나누어 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본교와 의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의 취지는 알지만,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또는 본교와 의대 자료의 구분을 일정한 양식으로 해주시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고 오해 없이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이나 예산의 공식적인 자료를 동일하게 정리해주시면 저희가 수월하게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작년에 자문을 할 때도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본다고 하면 본예산과 최종 추경과 결산 이렇게 3가지를 놓고 봐야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추경을 보면 진도율이 나와 있지만 본예산과 대비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 세 가지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 간서명 란 >

의 장



있도록 정리해 달라는 것이 저희가 자문한 의견이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고 파악하고 자문하기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제 생각에는 표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본 예산표를 하나 만들고 추정 중에 3차가 최종 추정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공식적으로 자문 받은 것은 3차 추경이 최종입니다. 3차 추경 후 내부적으로 예비비 집행과 목간전용을 하였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 계규칙 상 예비비집행과 목간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전용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차 추경 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금번 결산서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하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예산팀에서 정리해주신 자료도 받아봤지만,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작성 기일을 미리 정해 두자는 것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1월 21일자, 1차 추경예산은 7월 15일자, 2차 추경예산은 11월 22일자로 작성되었으며, 3차 추경예산은 2012년 1월 19일자로 작성되어 올해 1월 9일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 7차 회의와는 불과 열흘차이입니다. 아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 아니면 2차 추경 예산을 가지고 2012년 등록금에 대해 논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추경예산과 결산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3차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교원 보수에서 15억, 직원보수에서 8억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더 차이가 납니다. 2차 추경예산하고 실제 결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등록금심의를 하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 1% 올리면 7억 3%면 20억인데,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된 가운데에서 등록금심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차 추경일이 1월 19일이었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1월 9일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앞으로는 3차 추경에

< 간서명 란 >

의 장



산 작성이라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월 첫 주에 한다고 하면 최소 한 주 전에 3차 추경예산을 작성 해놓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부서들의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 등록금 결정과 관계되며 학교 예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예결산 작성 및 관련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협의회 일자를 제도적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평의원회가 예결산 자문하는 것은 매년 언제이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언제 열리므로 관련 본예산과 추경예산 및 결산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학기 별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를테면 교원보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교수를 포함해서 모든 교수 임용은 학기별로 이루어지므로, 9월까지 임용이 안 되면 해당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감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3차 추경예산까지도 교원보수 항목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1월 초까지는 가 결산을 해서 틀림없이 안 쓸 돈은 정리를 하고, 이를 반영한 자료를 가지고 등록금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그 당시 기준이 뭐였습니까? 3차 추경이었습니까? 2차 추경이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 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으로 설명이 되었구요. 설명 당시 전날까지 집행된 집행실적도 포함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상의 포맷을 일치해 달라. 두 번째는 타임스케줄을 미리 확정해 달라. 3차 추경이 있는 후 등심위를 하면 제일 좋고. 기준성이 뚜렷해지고 실제와 숫자상의 오차가 없도록 해달라. 그 질문이시죠?

평의원 이순일 : 3차 추경을 할 때도 학기별로 확정되는 금액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아까 말씀하신 3차 추경 후 교원 보수는 임용의 미충원에 대한 보수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한 잔액이 있는 겁니다. 충원에 의한 변동사항은 학기별로 끝났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문할 때도 그렇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임용 예정 대비 몇 명 충원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임용 교원분의 급여는 예산에 잡았지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말씀하신 내용은 본 예산대비 했을 경우 드린 자료입니다. 본예산 대비로는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었고, 3차 추경으로 하면 학기별로 끝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어차피 털어질 숫자들이 등록금심의할 때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에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은 꼬리표를 꼭 달아달라 말씀드렸는데 안달아주셨습니다. 안달아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원인사의 이월은 교원인사, 기금은 기금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예산팀장 조정숙 : 미사용이월자금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임용 미충원에 대한 이월은 2012학년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 여쭙볼게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 자문을 할 때 2010학년도 경상비 전입금이 본 예산 10억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69억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설명이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려 했는데 상황이 안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 이제 2011학년도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것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때 예측했는데 매매가 안 되어 취소되었고,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1학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결산이 되고나니까 법정부담금이 26억 안 들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학교가 집행한 법정부담금이 62억이고 법인에서 전입한 금액이 35억이면, 26억이 교비로 대납집행된 것이고 법인에서 안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숫자는 맞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26억이 안 들어오면 등록금 회계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6억의 차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무처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습니까? 법인에 가서 추후라도 변제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의원 이순일 : 결산담당 부서장이시니,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면 왜 발생했나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기획처의 소관입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전입금을 못주는 상황인데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법인 결산서 확인해보십니까? 돈이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법인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결산서는 가끔 봅니다.

의장 강명구 : 이영현 상임이사께서 차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2011년형 체어맨 57,624,870원으로 2011년 12월 28일 취득하셨습니다. 학교 법인 자산입니다. 기름 값, 차량 유지관리비 어디서 나오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학교법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장 강명구 :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얘기해주시고 저희 지금 공식석상에서 공적인걸로 말씀해주십시오.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차를 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대우학원 법인의 재산은 법인이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장 강명구 : 전반적으로 보아 아주대학교재단이 그렇게 나쁜 재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 재단도 사학연금을 법인이 부담을 많이 안합니다. 그렇지만 2011년 3월 저희가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온 공문을 나중에 보았습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못 낼 때에는 특히 사학연금관련해서 못 낼 때에는 왜 못 내는지 앞으로 어떻게 낼 건지에 관해서 재정여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고 대학평의원회의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서 이순일 교수님과 의논해 본

< 간서명 란 >

의 장



결과 재단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예산 자문을 1월 19일에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자문을 끝내지 않았는데 끝낸 것으로 치고 교과부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원회가 4월 27일인데 4월 30일까지 내게 되어있는데 이런 공문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내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어디 얼마니까 얼마를 걷어 들이겠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어기지 않으려면 사립학교연금법에 의거한다면 당장 내일이나 모레까지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재단이 작성해야하는 재정여건개선계획서를 봐야합니다. 개선계획서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문 수신처는 학교법인이 되겠죠. 총무처도 참조로 수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단이 해야 할 행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개선계획서가 이미 제출된 건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내용을 보신적도 없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서 기존에 의대와 합쳐서 총 35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학교에게 부담한 것이 9억 5천정도입니다. 올해부터 15억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법정부담금전입금은 교비회계 총액으로 봐야 합니다. 2011학년도에는 36억원이고, 2012학년도 본예산은 43억원으로 자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기획처장과 총장이 재단에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래서 늘어난 규모가 되었고, 차츰차츰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해야 되겠죠.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법이 통과된 사항이고 여기서 기준은 사학연금에 있어서 법인 부담금을 100% 충족을 못시키는 상황에서는 어째서 그런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을 받기위해서 그 전단계로 이사회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자리, 즉 대학평의원

< 간서명란 >

의 장



회에서 그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라면 보고를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의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까 처장님께서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온 공문을 참조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문 내용 중 『자율적인 책무성 확보유도』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사전 심의 필수화’ 입니다. 오늘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하셔야 하는 처장께서는 저 사실을 인지하시고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학평의원이자 등록금 심의위원인 분들도 2분이 계십니다. 같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대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고, 법령도 개정이 되고 교과부에서 저런 공문도 보냈다면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재정여건개선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4월 30일 월요일 이전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공문의 존재를 발견해서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기금을 가지고 투자했던 문제도 똑같이 교과부에 답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안 받은 내용을 그냥 제출해서 사단이 났던 것 아닙니까? 처장께서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지 아셔야 합니다. 공문을 참조로 받아서 대학평의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논의를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학교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지난번에 펀드 불법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얘기해서 교과부에서 사립대학 감사할 때 저희는 빠졌습니다. 특별채용 관련해서도 매듭을 저드렸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위법이 됩니다. 저희가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1월16일날 회의 한 걸로 냈을 적에 나중에 걸리면 무슨 창피입니까?

평의원 윤갑희 : 저 공문이 언제 온 거죠?

평의원 이순일 : 지난 번 평의원회를 했던 그날 3월16일자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혹시 이의원님께서 접하신 건 언제죠?

평의원 이순일 : 오늘 아침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윤갑희 : 외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부담금이면 나와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재정지원대학 제한 대학 선정 시 참조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법정부담금이면 저것 말고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3월 16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총무처장 이준섭 : 4월초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처장님만이 아니시더라도 누군가 이 대학이 대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맨 먼저 본 사람이 사통팔방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인에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를 쓰고 통보를 해서라도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재단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고, 재단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정도로 이 사안을 간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을 충분히 재단에서는 검토를 하실 거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방침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 말씀은 더 실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일종의 편법으로 법정전입금 문제를 벗어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이 법을 보면 법정전입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정전입금 중 두 개 항목을 교비로 대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의대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다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예결산 자료 및 처장들의 설명과는 달리, 교비회계의 사학연금과 재해보상부담금을 재단이 모두 부담했다며 재정여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에 명시가 안 된 항목들의 법정부담금은 모두 교비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법인의 시각이 당연하다는 듯이 추측성 발언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처장의 태도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정부담금이 법인에서 안 나오면 등록금회계에서 나오는 건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대학 평의회가 수익사업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법인이 더 수익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전입금을 더 내야 한다고

< 간서명 란 >

의 장



학교에서 뜻을 모아 재단에 의사를 전달해야 할 상황에서, 처장께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안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법인이 대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은 마치 광우병 관련하여 수입쇠고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론이 비등하니 “미국대사관도 괜찮다더라. 그러니 그냥 먹어라” 하는 농수산부 장관의 해명이나 진배없습니다. 총무처장님은 재단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힘을 합치셔서 재단에게 돈 빨리 내보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입장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이에 맞추어서 준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학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사항을 법인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공식적인 답변을...

총무처장 이준섭 : 우려하시는 상황은 논의를 했고, 재단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까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중 하나를 아마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조경숙 :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비회계 법정부담금전입금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재단과 나눴던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재단하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누구랑 언제 나누셨어요?

예산팀장 조경숙 : 실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런 문제의 검토를 문서로 안하고, “누가 무어 무어라 카더라” 식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이영현 상임이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정개선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하셔야합니다. 오늘 팀장님이 말씀하려는 것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현 상임이사가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그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결산내용중 하나와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공문에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재

< 간서명 란 >

의 장



정여건개선계획서 제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후속 공문에서 2012학년도 예산심의를 이미 완결하였으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학평의원회는 2012년도 예산심의를 완결한 바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평의원들 모두가 동의하시며, 처장께서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추가하는 사항에 보시면 2012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부담금의 학교 부담 관련한 내용을 포함(예산서 등)하여 예산심의를 완료한 경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병원의 자문을 마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서를 내주신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2년 예산 자문회의록을 첨부한다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개선계획을 만들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이 유일한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단 개방감사 및 개방이사를 제대로 추천해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재단은 사립학교법의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실효적인 외부인사 추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봐야하는데 안 주십니다. 저희가 보고서 정말어렵구나. 힘을 합쳐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감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공문조차 접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획처를 통해서 재단에 답변을 달라는 대학평의원회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 자리의 평의원님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아침에 이 공문을 발견하고 기획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요청하고 2시 반에 공문 수령 사실을 듣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부에 재정여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4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 자리가 지나면 펀드투자 경우에서처럼 다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자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의 교비대납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학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문서가 제출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처장께서 교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 간서명 란 >

의 장



준 최소한의 예외조항인 대학평의원회의 예산 자문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식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평의원들의 이해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지만 정확한 fact는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사소한 것인데 8페이지 보시면 운영차액이 있습니다. 11억 4천5백만원 증감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단기운영차액이 11억4천4백만원. 1백만원 차이는 오타입니까? 계산상의 문제입니까?

경리팀 엄일중 :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11억4천4백몇십만원 입니다. 그 부분은 단수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전에 주신 자료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경상비 전입금 내역을 보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기타에 주차장 운영수익금. 예를 들어 2005년에는 5천6백만원 2004년에는 5천6백만원 2003년에는 4천8백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이 법인에 갔다가 온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은 직접?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은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수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점인데 그 기간에 한해서만 내부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접 계약을 하고 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때도 한번 여쭙어 봤지만, 처장님께서 주차장 운영수익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까지 7년 동안 계속 6천1백6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계약금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액수라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주차료 수입을 반영해서 계약을 합니다. 주차료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면 주차 대행회사로부터 더 수익을 징수를 했을 텐데...

평의원 이순일 : 2004년 비해 2010년에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 차가 늘었

< 간서명 란 >

의 장



다고 체감을 합니다. 저희가 주차할 장소를 못 찾으니까요.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있던 시점이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교직원이나 교수분들에게는 주차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늘어났겠죠. 여태까지 하루에 천원씩 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적은 액수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과거에는 교직원들에게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료주차로 바뀌면서 이익부분은 줄어들고, 차량은 늘고 해서 손익이 비슷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총액으로 보면 회사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학생 한두 명 장학금이라도 여기서 나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7년 동안 똑같은 액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인지는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저희가 수입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파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차선 도색 등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매년 반영하셔서 학교에 이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임파크 요원들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그래서 하도 보기 안되었어서 ‘지키지 마십시오. 안 지키셔도 됩니다.’ 농담하고 갑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4월 9일자 아주대 학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보에 이런 것이 실렸습니다. “재단 전용 주차장? 율곡관 옆 주차장, 재단관계자만 주차할 수 있게 자리를 지키는 주차요원. 우리학교 주차장에 주인이 정해져 있었나요?” 학생들이 보기에다 이상했나 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요 옆에 차를 대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어떠한 분들만 대는 자리니까’ 하면서 몰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쪽에 다시 대고 왔습니다.

의장 강명구 : 죄송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교수전용 주차구역 말씀이십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차량번호가 쓰여 있는 자리가 있는 걸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의장 강명구 : 더 이상 얘기하기 창피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평의원 윤성승 : 10페이지 보시면 지출항목의 교육외비용에 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많이 줄었는데...

총무처장 이준섭 : 작년 2011년도 2월 28일 현재 평가손실액이 28억9천2백만원이었다가 올해 6천4백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평가손실액은 29억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은 2010학년도부터 특례규칙이 바뀌어서 최초 2010학년도에 전액이 여기에 잡혀있는 것 이고 상대적인 증감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학년도에 최초로 잡혔기 때문에 최종 평가손실이 2010학년도에 다 잡힌 겁니다. 단지 2011학년도에는 차액분만 잡히기 때문에 6천4백만원만 잡힌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올해가 적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시점으로 계산해보니 펀드에 투자해서 29억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2011년도에도 작년보다 평가손실이 줄어들어서 25억까지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2월 29일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작년보다 2천4백만원 평가손실이 늘었다는 겁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의원님 말씀은 증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평가손실을 과거부터 잡았다면 증감이 맞을 텐데 2010학년도에 최초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28억9천이 여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감부분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평가액 차액이 늘어난 거죠? 만약 내년도 결산을 할 경우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총무처장 이준섭 : 2월 29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손실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기에 늘어날 수도 있고 장이 좋으면 평가손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이것이 펀드 투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저희

< 간서명 란 >

의 장



가 기회비용의 손실도 크고 남아있는 다 팔기 전까지는...

평의원 이순일 : 앞으로도 복원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영구손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일 년 지나면서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의장 강명구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정말 별 불일 없는것만 남았는지, 앞으로 영구손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건데 -25억에서 +100억이 될지...

총무처장 이준섭 : 지금 남아있는 것은 원금기준으로 88억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펀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보면 글로벌 부동산 펀드 및 소위 Wrap Account 것 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빨리 환매하는 것은 고려 안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측이 안 되고 팔았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투자자문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작년보다 금년이 나빠졌습니다. 2~3년 지난다면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가손이 매년 발생한다면...

경리팀장 안영찬 : 잘 아시겠지만 평가 손실 최대 규모가 100억대까지 갔었습니다. 28억 정도 규모는 그나마 여러 가지 경제가 회복되어서 다행이면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환매결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8억을 환매하게 되면 확정 손실이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기금 운용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평가현황은 매주 매월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용사를 불러서 그동안 운용했던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단기간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의장 강명구 : 총무처와 교수회 회의에서 펀드투자불법성여부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5월 중순정도면 1차 예비 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1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예산전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 간서명 란 >

의 장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2월달 공공요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예산을 잡아봐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예산팀장 조정숙 : 2011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2월에 사용한 것을 3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납부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생주의로 정리를 해서 2월에 사용한 것은 2월에 집행해야 하는데 3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발생주의를 해서 예산을 한 달 앞당기면서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와 목간전용을 해서 맞췄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사용한 것을 1년치로 해서 매년 12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평의원 윤성승 :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2011학년도에 고지서 납부기준으로 하다 보니 2012학년도부터는 발생주의로 3월부터 2월까지 쓴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를 발생주의로 바꿨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대부분 발생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쓸 때 2월에 사용하면 3월에 청구가 되나 사용기준인 2월 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회계에서도 발생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도 예를 들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였는데 이것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2월에 사용한 것을 3월에 청구됩니다. 사용기준으로 2월에 사용한 것을 3월에 청구되지만 이것도 2월 사용집행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과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해 학기 사용분을 카운트 하기위해서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과도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평의원 이순일 : 건축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03페이지의 기금인출 적립 내역에서 건축기금항목 3번째 줄을 보시면 2011년 기금적립액 21억2천5백만원을 적립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물감가상각비는 21억5천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등록금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41억9천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무슨 명목으로 적립했습니까? 질문 드린 이유는 예산

< 간서명 란 >

의 장



은 감가상각비의 최대 액수인 44억5천만원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본 예산을 짜지는 못했었고...

평의원 이순일 : 본예산 자문 때는 기금회계 전출금을 본예산에 잡고, 설명을 하신 것은 건물 감가상각비를 최대 44억5천만원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건물 감가상각비로 22억5천만원만을 적어놓으셨기에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에 건물 감가상각비를 20억 덜 잡았으니 언젠가 20억원을 추가 감가상각 할 것인지가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 올해 적립한 돈하고의 차액 20억은 무슨 명분이며, 그 적립 명분이 등록금협의 때도 똑같이 설명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감가상각은 44억5천이 맞습니다. 이번에 결산 하면서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총 숫자는 41억 9천 6백이었는데, 103페이지에 있는 2011학년도 기금인출 및 적립내역에 21억5천5백만원은 건물 감가상각비라고 표기를 했고 그 밑에 5억2백, 2천, 15억1천8백 전부다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부다 합쳐져서 41억 9천6백이 되는데 설명에 위 아래 같다 라는 붙임표를 표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여 졌습니다. 명세서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액수는 맞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미리 알리고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그 위에 두 개 외부기금 건축기금과 건축기금이자는 기금회계 재원으로 건축기금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밑에 네 개 항목에 대해서 등록금 회계 재원으로 건축기금을 전출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구별해 놓으셔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지정적립금도 없는데 구분해 놓으셔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조금 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첨부자료 2011학년도 본예산 자문의견서 5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학년을 채우게 됨에 따라서 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법학전문대학원

< 간서명 란 >

의 장



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수와 교수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일반적으로는 24:1이라면 법전원 같은 경우 8:1이 됩니다. 법전원의 등록금수입으로 법전원 교육경비를 그대로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법전원 등록금수입으로 법전원을 다 충당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더 활성화하고 연구소득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 두 가지 규모를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등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방향을 법전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노력해주시고 연구소에서도 연구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개선의 여지는 있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고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리걸클리닉 사업도 유치하였고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법학전문대학원 말고 재정적으로 흑자인 곳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은 현재 재학생은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문대학원은 법전원 하나구요. 특수대학원은 내부적으로 연간 약 50억을 간접비로 내고 있고 추가로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의전원도 전문대학원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죄송합니다. 특수대학원은 현재 학교에 간접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고도 년 간 약40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특수대학원으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30%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내부적으로 매출규모 대비로 해서 간접비 징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책임운영부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학교에 조금

< 간서명 란 >

의 장



협력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무처장님께서도 재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정부담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자문사항을 마쳤거든요. 저희가 재단에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교과부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려 하는데 4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또는 누가 와서 설명해야할지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영현 상임이사가 평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의결해도 될까요?

평의원 이순일 :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재청합니다.

의장 강명구 :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영현 상임이사가 나오셔서 재정여건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4월 30일까지인데요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평의원 이순일 : 두 가지 중 하나 아닐까요? 대학평의회 심의는 의무사항인데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면 요건을 안 갖춘 공문을 보내는 게 될 것이고, 재단이 처장께서 예측하신대로 공문을 뒤틀어 해석해서 아예 공문을 안 보낸다면 의대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다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상충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학평의회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4월 30일 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4월 30일 월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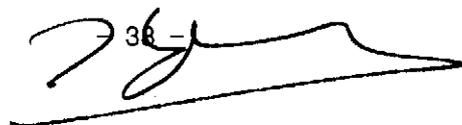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실제로 뜻이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 교과부 제출이 며칠 늦어진다는 게 교과부에 양해를 구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평의회는 다시 소집할 일은 없을까요?

의장 강명구 : 당연히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다. 불편하시더라도 5월 중에 한 번 더 모으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번에 저희가 모임 적에 어차피 병원이 2012년도 예산 자문을 받아야합니다. 받지 않으면 재정여건개선 계획을 낼 수가 없어요. 저도 바쁘고 불편하지만 한 달 여쭙 지나서 5월쯤 되어서 병원 예산 자문 받으시고 거기에 더해 추경 받으시고 와서 재정개선 계획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매듭짓고 하는 것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일정을 4월 30일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논의하든 상의하든 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할 일이고, 다만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계획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평의원 윤성승 :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4월 30일 전이 아니라 언제든 해달라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건 교과부와 법인하교의 문제이니까...

의장 강명구 : 기획팀장님 간사시니까 병원 측에 말씀 주셔서 재정여건개선 계획서를 안 내면 안 되는데 내시려면 자문을 받아야하고, 자문사항 안에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안 쓰면 재정여건개선 계획 못쓰게 되어있어요. 빨리 해서 원만한 타결을 통해서 대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승권 :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방이사와 관련된 교과부 질의 공문 발송은 윤성승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개방이사 두 분이 임기 전에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겠느냐 라는 식의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첨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TA관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간사 김승권 : 그때 말씀 주신 후에 전체 단과대학에 연락을 다 했습니다. 이번 전화를 통해 미연에 방지를 한 것도 한건이 있습니다. 또 예산팀이나 관련 부서와 향후에 제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장 강명구 :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입니다. 이게 요약본인데 실제로는 다 보려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핵심사항은 학부체제에서 학과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님 설명해주시죠.

간사 김승권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직제 규정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개정된 것과 학제 개편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2쪽 보시면 ITS대학원이 교통ITS으로 바뀌는 것과 우주계측정보공학과를 우주전자정보공학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면 융복합전공트랙이라고 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통상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그 조항을 넣었고요, 개정 신규대비표를 하나하나 보시는 것보다는 별표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8쪽 보시면 기초교육대학 소속이었던 교직부가 이번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본부 산하의 부서에 있어야 한다 해서 교무처로 소속을 변경했고, 종합인력개발원 소속 사회봉사센터를 학생처로 이관한 것입니다. 19쪽을 보시면 학제개편에 의해서 에너지시스템학부를 에너지시스템학과로 개편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죠? 개정의 취지가 어디 있죠?

간사 김승권 : 사실 취지는 여기에 다 있는데요, 이것을 다 복사하기가 너무 많아서 의장님께 미리 드리고 요약본을 가져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BK21 사업의 에너지시스템사업단과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시스템학부는 융합과정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교육목표가 융합교육이며 연구도 융합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이것을 학과로 돌려놓으면 융합분야라는 특징을 부각시키기 어렵습니다. 에너지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일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고, 3차 BK사업을 위해서도 융합분야라는 특징을 계속 살려야 합니다. 과연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잘 생각한 다음에, 에너지시스템학부를 에너지시스템학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에서 하신 건가요?

간사 김승권 : 기획처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예외는 있죠. 이것 말고 국제학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승권 : 네, 특수학부로 해서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학부장님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시 3차 BK사업 지원신청을 융합분야로 한다면 어차피 에너지시스템학과와 유사한 편제가 되어야 할 텐데, 바꿨다가 또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평의원 이재호 : 분자과학기술학과나 금융공학과를 보시면 실제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주는데 있어서 공학, 이학, 금융공학 이런 식으로 그 전공에 따라서 복수의 학위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에너지시스템학과로 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만들 때의 논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워낙 다른 전공들을 한 틀에 묶으려다 보니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아 에너지시스템학부라는 모양새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교무에서 의논을 했을 것이고 학 학부로 내려가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시스템학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작년을 연구년으로 보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당장 몇 달 후에 있을 3차 BK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이재호 : 분자과학기술학과도 같은 입장이라서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분자과학기술학과는 관련 전공이 공대에 있지 않나요?

간사 김승권 : 아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분자과학기술학과는 공대에 대응되는 주된 학부가 있지 않나

간사 김승권 : 그건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에너지시스템학부를 학과로 바꾸어도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신건지, 아니면 대학원은 다 학과인데 학부가 하나 있어서 이상하다는 행정 편의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라면 괜찮은데 후자라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장이 없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직제개편 할 때 이왕이면 조

< 간서명 란 >

의 장



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엄연하게 학칙기구인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직제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 유명무실한 유령조직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에서 이거 통과 안 시키면 통과 안 되는건가요?

의장 강명구 : 통과 안되는 겁니다.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간사 김승권 : 21페이지 별표4 특수대학원에 경영관리를 신설했고, 생산/운영관리를 생산운영관리로 명칭변경을 했고요. 22페이지에 국제학부를 제외하고 학부에서 학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부를 없애고 단과대학과 전공만 나눠 놓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 학장님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각 위원회도 거쳤습니다.

평의원 이효철 : 학부에서 학과로 변경되면서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부에서 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죠?

간사 김승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맞는 전공을 찾아주자 하는 것과 공대의 경우 학생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논의 결과 뭉쳐있는 것보다는 세분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생 모집도 하겠다며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대학도 그런 변화가 있었고, 몇 년간 변화가 축적되다가 이번에 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저는 초창기에 학부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사람으로서, 물론 학생들의 소속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조금 노력을 덜 한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간사 김승권 : 23쪽은 학칙에 정원을 표기하는데 최근 5년간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지나간 것은 삭제하고 새롭게 표기하였습니다. 별표7도 같은 개념이고 별표8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9는 학제개편에 따라서 정원도 학과 정원으로 찾아가고, 단지 사회과학대학만 전체 정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별표10은 일반대학원 지식정보보안학과가 계약학과로 정원 20명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강명구 : 자, 이의 없으십니까?

평의원 윤성승 : 질문 있습니다. 정원 조정되는 단과대학도 있는 것 같은데

< 간서명 란 >

의 장



요. 혹시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절차적인 요건이 단과대학 학장이나 특수대학원 원장이 결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단과대학 교수회를 거쳐야 하나요?

간사 김승권 : 과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윤성승 : 과 정원이나 대학원 정원이나 특수대학원 정원 말입니다.

간사 김승권 : 그것은 전부 관련 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위원회에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의장 강명구 : 각 과에서 학과 회의를 거쳐서...

간사 김승권 : 하부 단위부터 계속 세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제가 궁금한 것은 단과대학 교수회나 교수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회의체에서 이 결정을 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단과대학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간사 김승권 : 아닙니다. 보통 회의록이 올라오는데 각 단과대학에서 학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단과대학별로 정원이 fix된 상태에서 자체 정원조정이면 몰라도 과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에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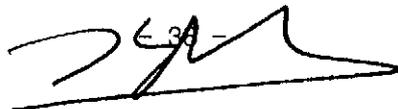
평의원 윤성승 : 제가 궁금한 것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고, 전체 교수회에서는 결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과대학 관련해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정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박사과정은 10명 신설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법무대학원 정원 10명이 삭제되었어요. 결국 법무대학원 정원 10명을 박사과정을 신설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절차적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건지, 학사운영위원회 그냥 결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임받아서 단과대학 학장이 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교수회의는 개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을 여쭙본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이걸 너무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당연히 각 전공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학과장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교수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수렴해서 학장이 그 의견을 가지고 교무회의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평의원 윤성승 : 저도 정원 변동이 있는 것을 토탈공지로 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교수들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 간서명 란 >

의 장



것을 할 때 학사운영위원회만 하면 절차상을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규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간사 김승권 : 제가 불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을 확인해서 윤성승 교수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효철 :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간사 김승권 : 대학평의원회 의결 완료한 후 총장님 결재를 득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평의원 이효철 : 왜냐하면 보직수당 때문에 기존에 다 받고 계시던 분이 팀장으로 다 나갔는데 과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70만원 받던 사람이 과장은 4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똑같이 하는 일도 똑같은 경우 현행대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간사 김승권 : 병원은 파악이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 학교 같은 경우 교원팀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 정했습니다.

평의원 이효철 : 우리는 다 보류시켜 봤어요.

평의원 윤성승 : 벌써 발령은 다 한 것 같은데요?

간사 김승권 : 네, 발령은 다 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학칙이나 직제규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발령일자가 3월 1일 부터인가요?

간사 김승권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러면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간사 김승권 : 저희가 학칙을 한번 개정을 하려면 약 3개월 걸립니다.

의장 강명구 : 여기서 통과를 안했는데 벌써 시행을 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간사 김승권 : 그래서 7쪽을 보시면, 4항에...

의장 강명구 : 4항은 행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 이게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의원 윤성승 : 제가 알기로 인사 변동이 있을 때 토탈공지 올린 것을 보니까 벌써 학부장을 해임하고 학과장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의장 강명구 : 절차상 잘못된 것이네요.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승권 : 그 근거는 2월 21일 개정된 직제규정을 근거로 해서 했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하위규정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상위규정을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의장 강명구 : 논리적으로 많이 모순되었는데요.

간사 김승권 : 저희들로 봐서는 직제규정이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직제규정이 학칙보다 위에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윤원석 이사장님께서 학칙도 규칙이다. 그래서 규정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평의원 윤성승 : 규정은 이사회에서 만드셨나요?

간사 김승권 : 네,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사항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학칙은 이사회에 안 가고요?

간사 김승권 : 네, 안갑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평의원 이재호 : 학칙이 그렇게 하위로 가면 우리 학교의 학칙이 갖는 중요성 그런 의미가 굉장히...

평의원 윤성승 : 결론적으로 보면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만 바꾸면 항상 다 시행이 가능한 것이네요.

간사 김승권 : 학칙과 직제규정을 보면 직제만 그런 것이지 학사 관련해서는 직제규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학교의 의사가 모두 반영 되는것이죠.

의장 강명구 : 지금 이상한 형식논리 때문에 굉장히...

평의원 이순일 : 직제규정에 학과장이 있으려면 학과가 있어야 하는데 학과가 있는 것을 어디서 규정하냐는 것이죠.

간사 김승권 :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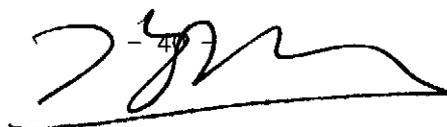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직제에 있는 것인지 학칙에 있는 것인지.

간사 김승권 : 학장회의, 직제기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직제에 학과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교무회의를 통해서 교무회의 회의 자료에 학과를 다 구분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교무회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교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학과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승권 : 학과제로 전환하는 것의 근거는 직제규정에서 전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거기서 학과장을 열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학과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되느냐는 거죠.

의장 강명구 : 각 대학은 행정학과, 경제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과로 되어있는데 그게 학칙에 있겠냐 아니면 노조 이런 식으로 직제규정에 있겠냐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학칙이죠.

간사 김승권 : 그것을 놓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법전문 교수님께도 자문을 많이 받아 진행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한 것은 학과가 신설이 안 되었는데 학과장을 먼저 임명한 것이예요.

의장 강명구 :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보류할 것인지 통과시킬 것인지 논하겠습니다. 학칙과 직제규정이 혼돈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직제규정과 학칙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규정사이에 혼란스럽다.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논의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간사 김승권 : 이 건은 형식상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학과제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현재 AIMS2 시스템이 아직 학과제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정쩡하게 발령 내놓고 학교일을 하는 것 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문제는 직제규정에 따라서 학과신설이 되었는데, 학칙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직제규정이라는 법인이 만든 상위법에 따라서 통과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 같아요.

간사 김승권 : 학과제 개편은 학교에서 발의를 해서 법인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평의원 윤성승 : 학칙 다 통과되고 직제를 임명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을 다 해임하고 다시 임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2학기부터 임명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학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1학기에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간사 김승권 : 그것은 저희들 행정인데요. 저희들 행정 편의성보다는 교수님

< 간서명 란 >

의 장



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각 학과에서 제대로 학과를 준비해 주십사 해서 발령을 먼저 낸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보통 변환기에 임명을 할 때는 임기를 2년 이렇게 안하고 한학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사 김승권 : 그렇기는 한데 저희 규정에 보면 보직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우리도 보니까 임기가 조금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몇 달 연장하는 경우로 하던데요.

간사 김승권 : 그것은 학기 중에 임기가 끝나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학기 끝까지 가는 그것은 예외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앞서 이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시스템 학부-학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거죠?

평의원 이순일 :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편 이유를 납득해야 그렇구나 하고 동의 할 텐데... 모두들 개편에 동의하신다면 굳이 반대를 할 생각은 없지만, 에너지시스템학부를 학과로 바꾸는 취지가 자료로 주어지지 않았고 납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연구년 가신 교수님들께는 전화를 해서 알려주지를 않네요.

의장 강명구 : 더군다나 학부를 만든 사람인데...

평의원 이순일 : 도대체 왜 개편을 해야 하는지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학부가 들어 있는 것이 거슬린다는 것인지?

간사 김승권 : 각 단과대학 의견을 받았습시다. 이러한 취지로 부에서 과로 학제개편을 한데 이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학부를 개설할 때 주도하셨던 분인데 연구년 가셨다고 해서 추진하는 쪽에서 적어도 연락을 해서 아시게끔 하고 여기 오셨어야 할듯해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학부를 했었는데 이게 학과로 돌아가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간사 김승권 : 죄송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때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시스템학부에는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그런 사실이 회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있으면 판단이 쉽겠다는 거죠.

의장 강명구 :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학평의원회 입장에서는 학과를 신설하고 학칙을 바꾸는데, 바꾸지 않았는데 벌써 학과장 임명해놓고 학과 다 신설해놓고... 통과 안했는데 어떻게 신설했냐 하니까 직제규정에 있다, 직제규정은 학칙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절차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간사 김승권 : 학칙 개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 학장님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2월초에 규정류를 열었고 20일간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지를 한 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 3월 16일에 대학평의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지를 하기 전이나 공지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얘기를 하고 대학평의원회를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제규정에 따라 다 결정되었으니 그대로 인정 할래 말래 결정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간사 김승권 : 이게 하나의 절차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20일 공고를 철저히 지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물론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베이스가 있긴 있겠죠. 그것이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절차상이고 내용은 심의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rubber stamp입니까? 고무도장도 아니고... 학과 신설 해놓고 학칙 변경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직제규정이 학칙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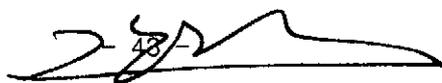
평의원 윤성승 : 앞으로 학칙 심의안건이 올라올 것인데 이와 유사하게 계속 반복 될 것 같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예전에도 심의에서 보류를 하고 지연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논란거리가 생기게 되었네요.

간사 김승권 : 무엇보다도 학제개편에 따라 교수님들 혹은 학생들에게 혼란

< 간서명 란 >

의 장



의 가중을 줄이자 해서 미리 발령을 낸 것이고, 그 발령을 낼 때에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몇 차례 법전문 교수님들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가장 좋은 방법은 학칙이 직제규정보다 위에 있으면 되고 학칙이 여기서 통과되고 하면 됩니다. 교수회나 조금 불편한 조직을 학칙이나 이런데서 없애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만약 학칙 심의가 안 되면 임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승권 : 솔직히 그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학칙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지금 임명하신 분들은 원상복구를 해야합니까?

간사 김승권 : 학칙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그랬다면 그렇게 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이재호 : 그런 견지에서 보면 학교 측에서 누군가 대표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설명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학교의 직원이 시지만 우리 간사이신데 간사가 학교에서 어떤 취지로 어떤 식의 과정이었고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간사 김승권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원래 기획처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밖에 회의가 있으셨고,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칙과 규정 사이에서 꼬이게 만든 근본원인을 해결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말을 하나 바꾸어가지고 아주 여려개가 꼬입니다. 학칙이 얼마나 중요한데 직제규정만 보시는지...

간사 김승권 : 통과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근본문제는 규정과 학칙에서 생긴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있어서 학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될텐데 학칙이 너무 허술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이 불편한거죠.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윤성승 : 저도 오늘 학칙위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법학하는 입장에서 학칙이라면 학교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위에 다른 법이 있다하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외의 사실이네요.

의장 강명구 : 실제로 대학평의원회 권한 중에 예산은 자문이지만, 이것은 통과 안 시키면 시행 안 되는 거예요. 학칙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칙이 실제로는 직제규정 밑에 있다고 보면 도대체 대학이...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나가주시겠어요?

<비공개 논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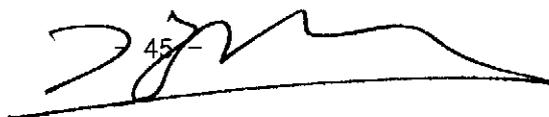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학칙과 직제규정 사이에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서 이런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만들어야한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권 :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45-


2012년 4월 27일

의 장 강명구 

부위원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흥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기 록 김승권 (서명)